

- (1) 「병역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  - (2) 공무와 관련 국회, 법원,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
  - (3)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
  - (4) 승진시험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
  - (5)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
  - (6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,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의2제1호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「결핵예방법」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
  - (7)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라 혈액에 참가할 때
  - (8)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
  - (9) 올림픽,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
  - (10) 천재지변,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  - (11)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, 같은 법 제14조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(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, 연 1회로 한정한다)에 참석할 때
  - (12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제11조 및 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·협의에 관한 규정」제2조의 교섭·협의 당사자로 교섭·협의에 참석할 때,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(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, 연 1회로 한정한다)에 참석할 때
  - (13)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「검역법」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 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
  - (14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·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
- 나)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
- (1) 공가의 승인대상인 『직접 필요한 기간』에는 검사일·소환일·투표일·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(시간)를 가산할 수 있음(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)
  - (2) 전보시 업무인계인수,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하되,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음
  - (3) 수검의무가 없는 검진(재검진, 2차검진, 확진검사 등)은 공가 대상 아님
  - (4)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·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
  - (5)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